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이 개정(2021.12.21.공포, 2022.6.22.시행)됨에 따라, 법 제40조제1항의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,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을 위해 이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개정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2021.12.21.공포, 2022.6.22.시행)에 따라

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

- 1) 2021.12.21. 법률에서 정하였던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 수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
- 2) 이에, 기존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 것과 동일한 수준(시설급여 20%, 재가급여 15%)의 본인부담 수준을 동 영에 규정하고자 함

나. 시행령에 규정된 본인부담 수준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

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

동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

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8(본인부담금)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재가급여 :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.6.22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8(본인부담금)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<u>1. 재가급여 :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</u> <u>2. 시설급여 :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</u>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97